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사 회 복 지 사 등 의 처 우 및 지 위
향 상 을 위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지역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각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3부터 제5조의4)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함.

4)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수당 등의 지급, 운영 세칙 마련 근거 등을 규정함.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중앙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지방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③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의2(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지방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중앙처우개선위원회 및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이하 “각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4(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5(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각 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중앙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지방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신 설>

<신 설>

의 3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③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의2(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지방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중앙처우개선위원회 및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이하

<신 설>

“각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지방
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제5조제2
항과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4(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처우

개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
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
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각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

<신 설>

여야 한다.

제5조의5(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각 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 제17조 (생 략)

제6조 ~ 제18조 (현행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연 락 처	(044) 202 - 3271